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 0100-161 (전화: 731-6221)	기안용지 시장 시장 22202 결재 부시장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6.6.		
보 조 기 관	부시장 전경 내무국장 인사과장 103	협 조 기 관	문서통제 86.6.3 103 103 103
기안책임자	인사기획계장 103	보임계장 고과계장 103	발송인 103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발 신 명 의	시장 103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개정 479		
(제 1 안) 내부결재			
1. 공무원증 규칙의 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무원증 발급 규정을 개정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공무원증 발급 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증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			
나. 개정요지 (1) 순회된 용어로의 개정 (2) 공무원증 일시회수 및 반환 : 해외여행, 휴직등 사유 발생시			

1505-25(2-1) 일[1]감
85.9.9. 증인

2132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작 40-41 1986. 2. 13.

첨부 : 1. 공무원증 발급규정 개정요지 1부.

2. 공무원증 발급규정 개정 (안) 1부.

3. 공무원증 발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제 2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 중 개정 통보

1. 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무원증 발급 규정을 개정 통보

하니 업무 처리에 속오 ~~있도록~~ 할것.

첨부 : 공무원증 발급규정 개정 1부. 끝.

(제 3 안)

수신 : 공보관

발신 : 인사과장

제목 : 시보계제 의뢰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의 시보 계제를 의뢰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 개정 1부. 끝.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공무원증 발급 규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의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 (공무원증 출처개정
-증자금 제301조)

2. 개정골자

(1) 순회된 용어로의 개정

(2) 공무원증 일시 회수 및 반환 : 해외여행, 휴직등 사유 발생시

3. 참고사항

- 관계규칙 : 별첨
- 예 산 ~~증~~ 별도조치 불요
- 합 의 : 법무담당관

4. 개정 (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관의장과"를 "기관의장에게"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촬영한"을 "찍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3항"을 "4항"으로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급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4) 발급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서식 개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정 규정의 변경 사항을 보완 (비고란 활용)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증 발급대장

卷之三

2136

신 구 조 문 대 비 표

現 行	改 正 (案)	備 考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증규칙에 의한 사용부서 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모든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82.9.20).	(현행과 같음)	
제 3조 (발급권의 위임) ①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변경·내부취입한다. ② 제 1항의 공무원증의 발급원자에 대한 공무원증은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82.9.20).	제 32조 (발급권의 위임) (1) ----- -----에게 ----- (2) 현행과 같음	
제 4조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 발급사유는 위임 받은 기관장은(이하 "발급원자"라 한다)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비장(이하 "비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은 반드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공무원증번호,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과 비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찰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미손되었거나, 기재사유의 변동으로 새 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소속기관장(또는 시, 광장)은 거쳐 발급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발급 및 재발급) (1) - (2) 현행과 같음 (3) ----- 같은 (4) 현행과 같음.	
제 5조 (공무원증 번호부여) 공무원증 번호는 별표와 같이 부여한다(개정 82.9.20).	(현행과 같음)	
제 6조 (공무원증 유통지와 수령) 발급원자는 필요로 하는 공무원증 유통지를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6개월마다(1월말, 7월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수령내용에 의하여 분배한다.	(현행과 같음)	

現 行	改 正 (案)	備 考
제 7조 (직인등의 사전날인) ①발급권자는 수령한 공무원증·용지에 시장의 직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용지판례에 첨부를 기하여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공무원증에 기재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철인을 양인후 보장한다.	(현행과 같음)	
제 8조 (포장) 공무원증의 포장은 투명한 P.V.C로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 9조 (공무원의 회수) ①발급권자는 제 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는 반드시 제 3호서식에 의한 분실확인서를 받는다. ②회수한 공무원증은 철거 제 6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예월 소각한다(본령 신설 82. 9. 20).	제 9조 (공무원증의 회수등) (1) --- 제4조 4항의 규정에 ----- ----- (2) 현행과 같음 (3) 발급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4) 발급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무원증의 분실 및 부당사용 사전예방 (공무원증 기획총 개정사항(→ 증기령 제 81호))

現 行	改 正 (案)	備 考
<p>제10조 (공무원등 본薪자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등의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운 전한 자에 대하여 타율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분실 : 경고(호제) ◦ 2회이상분실 : 징계요구 <p>② 공무원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관리한다(본조신설 82.8.. 20.)</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충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 에 의한 공무원증이 발급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③(폐지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증발급규정(의 규 제 885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p> <p>부 칙 (1980. 9. 20.)</p> <p>이 규정은 198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부 칙 (88. 6.)</p> <p>(1)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서식 개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충전 규정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정 규정의 변경 사항을 보완 (비고란 활용)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총리령

공무원증규칙증개정령을 아래 공포한다.

1985년 5월 16일

국무총리 노신영

◎총리령제301호

공무원증규칙증개정령

공무원증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중 “폐용방법”을 “다는 방법”으로, 동조제 3항 중 “폐용할 때”를 “다는 때”로 한다.
 제5조 제목중 “폐용”을 “달기”로, 제1항 중 “암시”를 “늘”로, “휴대하여야 하며”를 “지녀야 하며”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로, 동조제 2항 중 “공무원증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채용한 자는”을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있는 자는”으로, “착용하는”을 “입는”으로, 제3항 중 “폐용하게”를 “달게”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촬영한”을 “찍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등) ① 관공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회적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관공행정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공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경우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그려지거나 풀리면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이상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관공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반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규칙 제4 및 기재사항의 (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주)1 중 ④란 및 ⑦란을 각각 ①란 및 ⑥란으로 하며, (주)1에 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주)2 중 ⑥을 ⑦로, (주)5 중 “폐용이 가능하도록”을 “달 수 있도록”으로 한다.

④ 소속(별금기판명을 표시한 것)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증반급대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무원증반급제의 관한 정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자 증진의 규정에 의하여 일금한 공무원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공무원증으로 본다.

③ (서식개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공무원증’ 용지와, 별지 제1호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증용지’ 및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우원 중발급대장